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3828
결재일자	2015.1.2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담당	어르신복지담당	교육문화복지담당		
백지훈	정수영	이만형	01/28 도일환		
협 조					

- 20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-
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운영 계획

2015. 1.

교육문화복지국
어르신복지과

- 20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-
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운영 계획

일반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체·뇌병변 장애인 및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,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1.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2.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3.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지침 통보(서울시 복지정책과-1176)
4.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정내시 통보(서울시 복지정책과-695)

II 사업 개요

1. 목적 :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,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
2. 사업기간 : 2015. 2. 1 ~ 2016. 1. 31
3. 2014년 실적 (단위 : 명)

총 신청인원	적합 판정	부적합 판정
103	84	19

4. 사업예산 : 총 148,800천원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
- 국비 74,400천원, 시비 37,200천원, 구비 37,200천원
- 124천원 × 10개월 × 120명 = 148,800천원

5. 서비스 대상

- 소득 :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%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
- 연령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, 신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
※ 의사진단서, 처방전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), 소견서 등 제출

6. 이용대상자 선정방법

-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이용자는 신청 불가
-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때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
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
2순위) 차상위계층 및 경증장애인
- 예산초과로 서비스가 중지된 이용자의 경우 대기자로 선정하여 추후 서비스 재개 시 우선선발

7. 접수절차

- 주민센터(접수) : 서비스 대상자 및 관계인 등의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자의 소득조사 및 해당 질환 등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행복e음에 입력, 신청서와 진단서는 스캔하여 어르신복지과로 공문 제출
- 구청(결정) : 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

8. 서비스 제공주기 및 기간

- 제공주기 : 월 4회 제공(주 1회), 1회당 1시간
- 제공기간 : 10개월

9. 서비스가격 : 월 136천원(정부 124천원, 본인부담금 12천원)

- 납부시기 : 서비스 개시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사전납부
- 납부방법 :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 현금납부시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(날인, 확인)한 영수증 2매를 발급하여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각 1부씩 보관

10. 서비스 내용

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마사지,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

11. 바우처 지급 및 이용 :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

12. 결제 유효기간

-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원칙
-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처리 가능

13. 제공기관 등록현황

연번	기관명	대표자	주소	전화번호
1	건강클리닉안마원	신범석	성북구 한천로78길 36, 2층(2층)	969-0511
2	내용에 약손	이희연	성북구 동소문로 107, 3층 (동선동4가)	923-7577
3	한국안마원	김관수	성북구 보문로23길 12, 1층	6053-3791
4	푸른숲안마원	박경숙	성북구 동소문로 248, 102동 202호 (길음동,삼부아파트상가)	909-7997

III 행정사항

1. 제공기관 사후관리

- 근거 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
- 등록기관에 대하여 제공기관별 연 1회 정기점검 실시

2. 신청자에 대한 판정처리 및 통보

- 판정(적합, 부적합) : 매월 25한
- 판정결과 통보 및 바우처 이용안내 : 매월 31한

- 붙임 : 1. 2015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1부.
2.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변경 내역서 1부. 끝.